##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명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247

발의연월일: 2025. 2. 18.

발 의 자: 강명구·김소희·김기현

서명옥 · 김민전 · 김형동

엄태영 • 고동진 • 조은희

윤영석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,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고독사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 측면에서 일반 국민에 비해 사회적파장이 큰 바,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.

그러나 현행법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고독사 예방·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, 관계기관에 정책 수립·시행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미비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.

이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고독사 예방·관리를 위한 법적 근 거를 마련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·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, 보훈 복지를 증진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예우에 기여함과 동시에,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(안 제8조 의7 및 제31조). 법률 제 호

#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7의 제목 "(장례서비스)"를 "(고독사 예방 및 장례서비스)"로하고,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제2항) 및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"을 각각 "제2항"으로 한다.

① 국가보훈부장관은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고독사(이하 "고독사"라 한다)의 위험이 있는 고엽제후유증 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제31조제1항제7호의2 중 "따른"을 "따른 고독사 예방 및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의7(장례서비스) <신 설>	제8조의7(고독사 예방 및 장례서
	비스) ① 국가보훈부장관은
	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
	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고독사(이
	하 "고독사"라 한다)의 위험이
	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·고엽
	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
	유증 2세환자를 고독사 위험으
	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독사
	예방 및 대응 등 필요한 정책을
	<u>수립·시행할 수 있다.</u>
<u>①</u> (생 략)	<u>②</u> (현행 제1항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를	③ 제2항
제공받으려는 유족 등 장례를	
주관하는 자는 장례기간 중에	
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장례서비	
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.	
③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의	<u>④</u> 제2항
내용, 대상 및 방법 등은 국가보	
훈부장관이 정한다.	
제31조(자료의 제공 요청 등) ①	제31조(자료의 제공 요청 등) ①
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	
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	
록정보, 가족관계등록사항, 재	

외국민등록사항, 군복무에 관한 자료, 국세·지방세에 관한 자료, 소득·재산에 관한 자료, 국민연금·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·보험에 관한 자료, 생계급여·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, 출입국 정보, 사망원인통계자료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가기밀,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침해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1. ~ 7. (생략)

의2. 제8조의7에 <u>따른</u> 장례서비 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

8. ~ 11. (생략)

② ~ ④ (생 략)

,
1. ~ 7. (현행과 같음)
7의2 <u>따른 고독사</u>
예방 및
8. ~ 11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